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

의안 번호	20-177
----------	--------

제출년월일 : 2020. 11. .

제출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제안이유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책연구용역의 최종 결과물인 연구보고서 등을 구 홈페이지 및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책연구결과에 대한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연구결과의 품질 향상 및 활용도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규정(안 제1조 ~ 안 제2조)
- 나. 조례의 적용범위에 관하여 규정(안 제3조)
- 다. 정책연구용역이 종료된 후 지체없이 정책연구결과물을 정책연구관리 시스템 및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안 제4조)

3. 주요 토의과제

없음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정책연구용역의 공개)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 2020. 10. 15. ~ 11. 4. (제출된 의견 없음)
- 2)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자율평가 결과 : 해당 없음
- 3) 기획예산과의 위원회 사전심사 결과 : 해당 없음
- 4) 기획예산과의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 : 해당 없음
- 5) 여성가족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해당 없음
- 6) 제2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2020.11.10.)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연구용역”이란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가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자와 연구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용역을 말한다.
2.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란 정책연구용역의 추진과정을 관리하고 정책연구결과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행정안전부의 통합전산시스템을 말한다.
3. “정책연구결과물”이란 정책연구용역에 의해 생산된 연구보고서 등의 결과물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가 시행하는 모든 정책연구용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관리되고 있는 정책연구용역
2. 전액 국·시비를 지원받아 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정책연구용역
3.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정책연구용역
4. 기술용역 및 디자인·전산개발·임상연구·회계용역·단순 설문조사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일반 용역

제4조(공개)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정책연구용역이 종료된 후 지체 없이 정책연구결과물을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및 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정책연구결과의 일부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개할 수 없을 때는 그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정책연구결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와 공개 가능한 시점을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조례 제정에 따른 비용 발생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은 정책연구가 종료된 후 정책연구결과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제정에 따른 비용 발생 없음

4. 작성자 : 마포1번가연구단 이지예 (☎ 3153-8082)